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14. 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(2010년 9월 7일)

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)

가. 제안이유

○ 성폭력·가정폭력·유괴 등 아동·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·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·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·여성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명시 (안 제1조·제2조·제3조)
-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 기관, 범죄피해센터,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에 관한 협의·자문과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,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,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(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○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·홍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(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하고, 아동·여성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보면, 안 제3조와 제4조에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·운영토록 하였고,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홍보,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구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查結課: 原案 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·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제 8 호

제출연월일: 2010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성폭력·가정폭력·유괴 등 아동·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·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·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여 아동·여성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 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에 관한 협의·자문과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,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아동·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·운영 (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)
 - 1) 구 성 : 위원장 ·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
 - 2) 위 원 :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호선), 공무원, 구의원, 아동·여성보호관련 기관·시설 대표 또는 위임받은자
 - 3) 임 기 : 2년(연임 가능)
- 나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·홍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.(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3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필요 없음.

라. 기 타

- 1) 제정 조례안 : 별첨
- 2) 입법예고 (2010. 5.13 ~ 6. 2) 결과 : 의견 없음.
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.

붙임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·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·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아동" 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.
- 2. "아동·여성폭력"이란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, 실종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아동·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

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2장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

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"지역연대"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**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** ①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영등포구 아동·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1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
 - 2.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 - 3. 아동 ·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 - 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 - 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
 - 6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
 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기관

또는 시설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2.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아동・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
- 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3.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- 4. 지역 내 아동 ·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
- 5. 아동・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아동 ·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하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-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3장 아동 · 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

- 제11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 - 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 ·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-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5조(실비보상)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보호 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